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73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로 구역통합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438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로 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호(2015.07.30.) 세운3-4구역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9호(2015.7.30.) 세운3-5구역 사업시행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5호(2018.3.16.)로 세운3-4,5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6호(2018.3.13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세운3-4,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 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6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/ 6,987.24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국제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. 20층 (삼성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7월 30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(더센터시티주식회사→국제자산신탁(주)) 및 규약변경
 -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
 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 76,433.0908㎡ → 76,348.7588㎡ (감 84,3320㎡)
 -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
 - 임대주택 건립계획 변경 (58세대→61세대)
 - 부대복리시설(경로당, 작은도서관, 어린이집, 주민공동시설) 평면변경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대지면적 (㎡)	층수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5,452.21	지하8층 지상27층	76,348.7 588	62.14	923.44	89.93	전용 40㎡미만	52	
						전용 40㎡이상 ~ 60㎡미만	556	
						전용 60㎡이상	-	
						총 계	총 608세대	

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정비기 반시설	용 도 폐 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 류	규 모 (㎡)	종 류	규 모 (㎡)	시 행 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	도로	769.8㎡	도 로	1,331.72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			공 원	203.31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	합 계	769.8㎡	합 계	1,535.03㎡	국제자산신탁(주)	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

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